

서울연구원

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(안)

2016. 10.

기획조정본부
[경영지원팀]

서울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(안)

□ 추진근거

- 투자·출연기관 안전 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(서울특별시 공기업 담당관-8619, 2016.7.28.)
- 2017년 투자·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평가계획(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-9439, 2016.8.17.)
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(2016.9.28. 시행)

□ 주요내용

- 서울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(안)
 - 제7조의4(퇴직자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) 신설
 - 퇴직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 금지 조항 신설
 - 제10조의3(퇴직 후 취업 제한) 신설
 - 퇴직 후 취업 시 연구원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 금지
 - 제16조의2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)
 - 외부강의·회의 대가기준 개정 및 사례금 수수 제한 조항 신설

현 행

○대가기준 (단위 : 천원)

구분	원장	연구직	기타직원
상한액	400	300	230
1시간 초과	300	200	120

※원고료 포함

개 정 안

○대가기준 (단위 : 천원)

구분	원장	직원
상한액(1시간)	400	200
2시간 이상	600	300

※원고료 포함

시행일

○ 이 강령은 2016. 9.28.부터 적용한다.

붙임 : 신구조문대조표 참조

[붙임]

신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제7조의4(퇴직자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)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서울연구원 퇴직자(이하 '퇴직자'라 한다)에게 직무상 어떠한 특혜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② 임직원은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에 대하여 부당한 수의계약, 대가 과다지급 등 계약상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③ 임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 행동강령 및 서울연구원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.</p>
<신 설>	<p>제10조의3(퇴직 후 취업 제한) ① 임직원은 서울연구원 퇴직 후 취업 시 「공직자윤리법」 등 관련 법령과 이 행동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임직원은 퇴직 후 서울연구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으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서울연구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

현 행					개 정 안			
제16조의2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) ① ~ ② (생략)					제16조의2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(단위 : 천원)			
구 분	원장	연구직	기타직원	비고	구 분	원장	직원	비고
상한액 (단위:천원)	400	300	230	원고료 포함	상한액(1시간)	400	200	원고료 포함
1시간 초과	300	200	120		2시간 이상	600	300	